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 . . . (제 회)	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5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로 인한 자동차 내구성·성능 향상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 교체 시 자동차 구매 비용 경감을 통하여 사업자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과 차량충당연한을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완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00.00.00), 규제심사

대통령령 제 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의 승용자동차의 자동차대여사업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자 동 차 대 여 사 업 용	경형·소형	5년
	중형	7년
	대형	9년
	환경친화적자동차	9년

별표 2의2의 승용자동차의 자동차대여사업용의 차량충당연한란 중 “1년”을 “2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819, 3822